제24호(2012. 7. 2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 승 용

1.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과 현황 ····· 3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문제점 ····· 6
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황윤재** 부연구위원　02-3299-4247　yjhwang@krei.re.kr
내용 문의: **국승용** 연구위원　02-3299-4269　gouksy@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대부분(99.9%)이 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급식비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2011년의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약 4.9조 원에 달하며, 학교급식비 예산 중 식품비가 약 59%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률이 증가하면서 보호자 부담률은 2007년 72%에서 2011년 48%로 감소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개별 학교와 민간 공급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가 보편적임. 학교는 식재료를 품목군 별로 세분하여 4~5개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는데, 공급계약의 54%가 계약기간 1개월로 소규모 단위 단기계약인 실정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재료 공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시·도 단위 전역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광역형 지원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없이 우수한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도시형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한편, 농촌 지역에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접한 시·군 지역을 포괄하여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학교급식 식재료는 품목군별로 소규모 분할 발주되고 단기 계약의 비중이 높아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며, 장기 계약재배가 곤란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움. 식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화가 어렵고,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하며,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함.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를 활성화시켜야 함.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품질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식재료의 표준화가 필요함. 또한 학교급식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 구체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급 시 지방계약법 적용 배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함.

1.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과 현황

1.1.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

▢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과 급식범위 확대

○ 1981년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
- 학교급식법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16차례 개정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학교급식 범위 확대
- 1997년 초등학교 급식, 1999년 고등학교 급식 등 단계적으로 급식 범위가 확대되어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전면급식 시행

▢ 2000년대 들어 학교급식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가시화

○ 2000년대 들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 제기
- 2003년 학교급식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2006년 수도권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학교급식 품질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
- 민간 영리사업으로 추진되던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강화

▢ 최근에 학교급식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

○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확대
-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확대
- 2011년 말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14개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1.2. 학교급식의 현황

▢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99.9%에서 학교급식 시행

○ 99.9%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시행
- 학생 수 기준으로 99.3%의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공
- 초·중등학교의 대부분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영의 비중 97.2%

표 1. 학교급식 실시 현황(2011년)

구 분	학교 수(교)			학생 수(천명)			운영 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888	5,887	99.9	3,141	3,127	99.6	5,886(99.9)	1(0.1)
중 학 교	3,155	3,154	99.9	1,902	1,896	99.7	3,100(98.3)	54(1.7)
고등학교	2,285	2,283	99.9	1,950	1,921	98.5	2,024(88.7)	259(11.3)
특수학교	155	152	98.1	24	23	95.8	147(96.7)	5(3.3)
계	11,483	11,476	99.9	7,017	6,967	99.3	11,157(97.2)	319(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2012

▢ 2011년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4조 8,631억 원

○ 2011년도 학교급식 예산은 4조 8,631억 원으로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비 2조 9,756억 원(58.8%), 인건비 1조 2,215억 원(23.8%), 설비비 3,782억 원(9.5%), 연료비 등 3,620억 원(7.9%)

○ 학교급식 예산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4.1% 증가
- 학교급식 식수 인원은 2007년 760만 명에서 2011년에 697만 명으로 감소, 1인당 급식비 예산은 연평균 6.4% 증가

그림 1. 학교급식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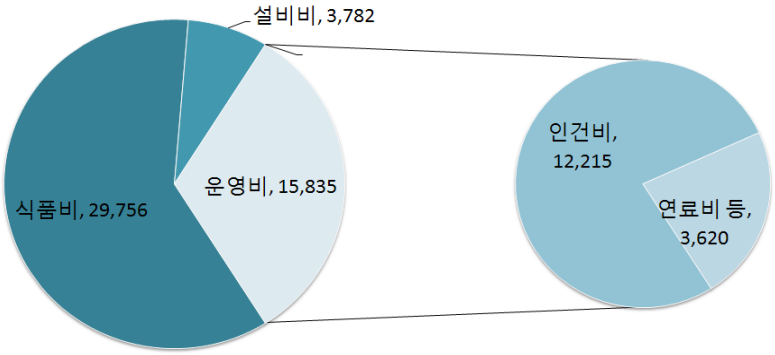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2012

○ 201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평균 약 70.9만 원
- 1인당 연간 급식비는 초등학생 64.3만 원, 중학생 62.4만 원, 고등학생 89.2만 원, 특수학교 136만 원

▢ 급식비 보호자 부담률은 2007년 72%에서 2011년 48%로 감소

○ 교육비특별회계의 급식비 부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교육비특별회계 급식비 부담률: 2007년 24% → 2010년 38%

○ 2010~2011년간 보호자 부담률이 61%에서 48%로 큰 폭 감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호자 부담률이 크게 감소
- 교육비특별회계의 급식비 부담률은 33%에서 38%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은 5%에서 12%로 증가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문제점

2.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관련 제도

○ 식재료 구입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조달방법, 업체선정 기준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학교와 공급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

○ 교육과학기술부는 식재료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 식재료의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수의계약 억제를 권장
- 조달청의 나라장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등 전자조달을 통한 식재료 구매를 권장
-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입찰 방식을 권장
- 학교급식법(제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 확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
- 지방계약법은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
- 학교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민간 공급업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 방법에 비해 식재료의 품질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공급업체 선정 가능
- 수의계약이 아니므로 추정가격 상한 규제를 받지 않고 공급업체를 심사하여 대규모 계약 체결도 가능

2.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1)]

▢ 개별 학교와 계약한 민간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

○ 학교에서는 평균 4.7개의 공급업체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
- 지방계약법 상의 수의계약 기준, 지방 교육청의 청렴도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식재료를 품목군별로 분류하여 다수의 공급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품목군을 구분하여 품목군마다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
-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모든 식재료를 통합하여 단일 공급계약을 체결

○ 규모가 큰 학교는 품목군을 세분하여 공급계약의 규모가 추정가격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곡물을 쌀과 잡곡, 청과물을 채소와 과일, 축산물을 육류와 난류 및 가금육, 가공식품을 김치와 기타 가공식품 등으로 세분

○ 학교와 공급업체 간의 계약 기간은 대부분 3개월 미만
-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가 54%,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23%
-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에 장기 계약을 체결

▢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 지역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실정
- 농촌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주로 농협이나 농업법인 등 산지 생산자조직이 자신이 보유한 물류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형태가 대부분
- 도시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물류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식재료 품질 관리 등 정책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

1) 이 부분은 황윤재·국승용, 『학교급식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농촌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인근 시군 지역의 학교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점형 센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

- 전라남도는 2011년, 나주·순천 등 주요 거점 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인근 시군의 학교에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 충북 청원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인근 진천·괴산 지역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추진
- 학교급식 식재료가 다양하고 연중 공급해야 하므로 특정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으로 급식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일정한 사업 규모를 갖춰야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표 2.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과 특징

유 형	센터 운영	물류 시설	사 례
농촌형	농협, 농업법인 등	센터 직영	전남 순천, 나주, 충북 청원, 충남 당진 등
도시형	지자체 직할	위탁	울산 북구, 서울 성북구, 경기 하남 등
광역형	전문기관 위탁	위탁기관 직영	서울친환경(공사), 경기친환경(농협)

○ 대부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공식품 등 식재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촌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대부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 과제
- 서울시 성북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을 서울 센터에서 공급받고, 쌀·김치·수산물 등의 공급업체를 평가하여 우수 업체가 성북구 내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유도
- 울산시 북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산 등 원거리 이동 농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 트랜스지방 등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동구매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가공식품 공동구매를 추진
-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1년 하반기 안양시 40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
- 콩기름, 참기름, 고추장, 토마토케첩, 당면 등 주요 10개 가공식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
- 품목 선정, 품질 기준 수립 등을 위해 영양교사협의회의 의견 수렴

○ 개별 학교의 계약권을 위임받아 공동구매를 추진
-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서 학교장의 계약권을 교육지원청에 위임
- 교육지원청에서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급조건 등에 대한 협상 등의 절차를 주관하여 농협중앙회 컨소시엄을 공급업체로 선정
- 공급업체와 개별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구매 물품을 공급

○ 가공식품의 품질 제고와 식재료 구입단가 인하 효과
- 콩기름을 제외한 9개 가공식품은 국내산 농산물이 원재료, 콩기름은 유전자변형되지 않은 콩을 원료로 사용
-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을 선정하여 식재료의 안전성 제고
- 해당 품목 실거래가 대비 14% 가격인하 효과(경기교육청 발표)

2.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문제점

▢ 식재료 품목군별 분할 발주에 의한 비효율

○ 식재료가 다수의 품목군으로 분할 공급되고 있어 물류 비효율 발생
- 규모가 큰 학교도 1일 식재료 총량이 1톤 내외 수준이어서 1대의 차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규모이나, 품목군별 분할 계약 때문에 한 학교의 식재료를 매일 여러 대의 차량으로 배송하는 실정

- 학교에서 식재료 배송을 요구하는 시간대가 오전 7시 30분~9시 사이에 집중되어 물류비 과다 발생
  * 공급업체는 1대의 차량으로 3개 내외의 학교에만 배송 가능, 배송하는 물량이 적고 배송할 수 있는 학교의 수도 제한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물류 구조

○ 단기 공급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과다한 거래비용 발생
- 빈번하게 공급업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업체선정, 계약 등의 행정 절차 추진에 과다한 행정력 투입
- 공급업체는 빈번하게 다수의 학교의 입찰에 참여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관리 등의 비용 추가 발생

○ 식재료 공급단가에는 원물 구입비와 배송비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되므로 식재료 비효율적 물류에 의해 식재료 구입비용 상승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안정 공급 곤란

○ 지방계약법은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에 적용하기에 부적절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 단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생산을 추진
- 공급 이전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입찰 원칙의 지방계약법 적용 곤란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므로 연중 또는 학기 단위의 장기 계약 곤란

○ 개별 학교에서 급식비를 전액 집행하는 체계 하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한 우수 식재료 확보가 곤란
- 공동구매는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나 현행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공동구매 추진이 복잡
  * 안양시 가공식품 공동구매의 경우 학교의 계약권을 교육지원청에 위임하고, 교육지원청이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공급계약은 공급업체와 학교가 체결하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
-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계약권 위임 방식의 공동구매가 확산되기 어려운 여건

▢ 식재료 표준화 미흡

○ 학교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기준의 식재료를 요구함으로써 효율적 공급 곤란

-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식재료를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현품명세 차원에서 표준화가 곤란한 수준의 다양한 식재료 공급을 요구
-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규격이나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별로 영양교사의 선호에 의해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
-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에는 명시하지 않은 채 발주 단계에서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 존재

○ 학교급식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도 식재료와 식단의 표준화 필요

- 학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43%로 학교급식의 품질 유지를 영양교사의 선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식 품질 유지에 바람직
- 전문가에 의해 개발·표준화된 우수 식재료 기준과 식단이 정착되면 학교급식의 품질 제고에 기여
- 식재료가 표준화되면 학교급식 수발주 업무 등 학교급식 관련 업무의 정보화 수준이 제고되어 식재료 물류 효율화에 기여

<영양교사가 발주 시 표기하는 식재료 명세 사례>

○ 감자의 상품 명세
- 깐감자, 피감자, 웨지컷, 손깐감자, 버터구이용
- 왕왕크기, 150g 이상, 개당 170g, 10g 내외, 17~19g, 20g, 25g 내외, 30g 미만, 40g 찜용, 알감자 지름 2cm, 크기 일정 1인 2개씩
- ○○원예농협 세척알감자, ○○○식품 알깐감자

○ 김치의 상품 명세
- 국산 100%, 천연조미료, 2중 위생포장
- 숙성 잘된 것, 싱싱할 것, 산도 신선도 적정, 산도 4.6~4.7 사이, ph 4~4.5
- ○○농협○○김치, ○○식품, ○○영농조합법인, ○○김치

▢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 관련 기구 간의 협력 미흡

○ 학교급식법은 급식비 예산을 학교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 발생

- 학교급식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의 동의없이는 급식과 관련된 정책 추진이 불가능
- 일선 학교의 자율적 참여가 없다면 식재료 표준화, 품질 제고, 공동구매, 지역산 우수 식재료의 활용 등 정부나 지역사회의 요구가 학교급식 개선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학교와의 계약 등에서 급식지원센터는 민간 공급업체와 동일한 법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급식비로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어 행정력·거래비용 낭비 야기

○ 교육행정과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행정조직 간의 협력 체계 미흡

- 학교급식법과 관련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 식생활교육과 식재료 공급 관련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어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상시 협력 체계는 미흡
- 지역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행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지방자치행정 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협력 관계는 미흡

○ 학교급식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치 못하여 사업 영역의 중복·상충 등의 비효율 발생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시 학교급식센터에서도 독립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추진하는 사례도 존재
-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상호 연계 체계가 미흡하여 우수 사례 전파, 상호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원활한 추진 곤란

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재료 공동구매를 활성화

- 개별 학교 단위에서 소량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것이 효율적
- 품목과 생산자가 다양한 농산물은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성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
- 공동구매를 통한 고품질 식재료의 계약생산,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 개발 등이 가능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통합배송을 지원하여 식재료 물류비 절감

- 공동구매로 확보한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물류센터에 집산하여 학교에 일괄 배송
  * 학교급식 물류센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직영, 농협 등 생산자조직이나 민간업체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 평균 4~5개의 품목군별로 분산 배송되는 물류체계를 급식지원센터가 1~2개 품목군으로 통합 배송하여 학교급식 물류비 절감
- 급식지원센터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산 식재료의 비중을 확대하여 식품이동거리 단축 및 신선도 제고 가능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면서 급식지원센터 간의 협력 강화

-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계절적·지리적 특성에 의해 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시·군 단위보다는 광역 또는 거점 단위로 공급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시·군 급식지원센터는 광역 또는 거점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영양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가공식품 공동구매, 지역산 식재료의 확보 등에 주력하여 급식지원센터 간의 연계 효율화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국 단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 계획을 수립

그림 2.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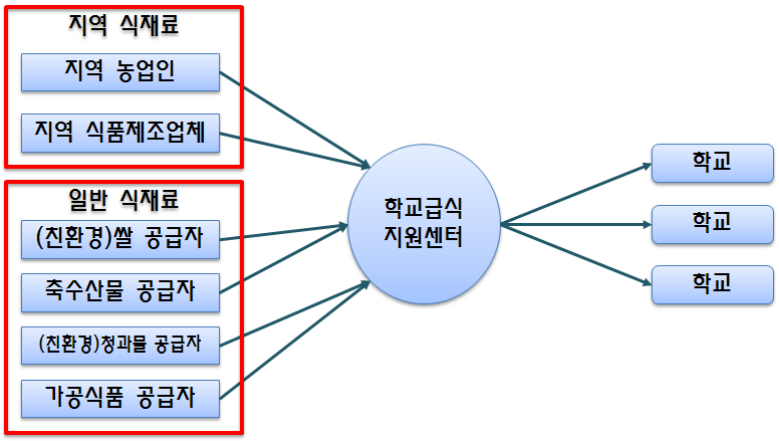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협력 체계 강화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지역 사회 등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

- 학교급식 예산의 약 60%가 식품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재료 공급은 학교급식의 핵심 사업
- 관련 기관 간 논의 체계를 상설화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의견 교환, 이해와 협력을 강화
- 학부모나 시민사회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고 안전성 모니터링 등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급식의 품질 제고

○ 학교 식생활교육, 식재료 현물 지원 등으로 사업 다각화

- 학교 급식을 매개로 지역산 식재료 활용, 친환경 식생활, 학교 텃밭 등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산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학교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지역산 우수 식재료 활용 확대, 지역 농업과 학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도모

  * 급식조달 부문은 한·미 FTA나 WTO의 정부조달협정 등에서 정부조달의 예외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용 식재료 구매 시 지역산 우대 가능

▢ 학교급식 식재료의 표준화

○ 각급 학교의 특성에 맞는 식재료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
- 전문가, 영양교사, 생산자 등 관련자 간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의 특성에 맞는 식재료의 규격 및 품질 기준 마련
- 표준이 마련되어야 정보 처리, 물류 등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급자-수요자(학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친환경인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등 원물에 대한 품질 기준은 물론 전처리, 반조리 등에 대한 안전성·품질 기준 필요
- 가공식품의 원재료 특성(유전자변형 여부, 국내산, 첨가물, 트랜스지방 등)과 표준 규격 등에 대한 기준 필요

▢ 학교급식법 개정

○ 급식비 부담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교급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 필요
- 학교급식법에서 급식비 부담 주체인 보호자의 부담률이 감소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
- 학교장에게 일임된 학교급식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 중 일부를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정부나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학교급식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체화
-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물류시설로 오해할 소지
-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표준화, 안전 관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 등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되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공급 시에 지방계약법 적용을 배제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연중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때문에 매달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실정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학교급식법 상의 기관이므로 민간업체와 구분하여 지방계약법 적용을 배제함이 합리적
- 지방계약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학교급식의 품질 제고 가능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필요
- 학교급식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농식품 유통과 안전성 관련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는 실정
- 학교급식 관련 제도 개선이나 정책 추진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기구 필요

○ 식생활교육지원법 상의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조직 간의 협의 활성화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련부처의 위원으로 당연직이며, 또한 유관기관·단체장으로서 농협중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과 정책 협의를 강화할 필요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7.17
발　　행　2012. 7.18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38-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